

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<u>하수도법</u>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<u>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5조 (배수설비의 관리) ①</b>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,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,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6조 (배수설비의 관리) ①</b> 법 제24조제3항의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6조 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</b>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·중지·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</li> <li>2. 지하수·하천수·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</li> <li>3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</li> <li>4.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</li> </ol> <p>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<u>거창군수도급수조례(이하"급수조례"라 한다)</u>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</p>	<p><b>제7조 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</b> -----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</li> <li>2.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</li> <li>3.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</li> <li>4.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</li> </ol> <p>② ----- -----<u>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 (일시사용신고)</b>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,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</b></p>
<p><b>제8조 (하수관거 준설 등)</b>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,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</b></p>
<p><b>제9조 (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)</b></p> <p>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 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10조 (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)</b></p> <p>① ----- -----<u>경우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10조 (사용료)</b>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<u>별표 2의 업종별 하수도사용요율표에 의하고 업종구분은 별표3의 하수도사용 업종구분표에 의한다.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11조 (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----- ----- --<u>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,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</p> <p>⑤ 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,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.</p>	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 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</b></p> <p>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<u>수도급수</u>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, <u>수도급수</u>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제7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.</p>	<p><b>제14조 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</b></p> <p>① -----<u>상수도</u>----- -----<u>상수도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</p> <p>③ <u>제8조의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4조 (점용료)</b> ① 군수는 하수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<u>별표 5의</u>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.</p> <p>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. 다만,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,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.</p> <p>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,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 한다.</p> <p>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.</p> <p><u>(신 설)</u></p>	<p><b>제15조 (점용료)</b> ① <u>별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경우</u> ----- <u>별표4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경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⑤ <u>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15조 (원인자부담금)</b>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(하수관거 및 펌프시설, 하수종말처리시설)의 신·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, 환경평가비, 용지비(지장물보상비포함), 공사비(부대공사비 포함), 시공감리비, 기타 부대비로 한다. 다만,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<u>별표 6의</u> 원인자부담금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</p> <p>1.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·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,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, 공공하수도(하 수관거,하수종말 처리시설, 펌프장)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</p>	<p><b>제16조 (원인자부담금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별표 5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경우</u> -----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<u>하수도법</u>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</p> <p>나.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</p> <p>다.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</p> <p>2.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는 상수도관, 가스관, 통신관,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·보수·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<u>말함</u></p> <p>나.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<u>공사</u> :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<u>같음</u></p> <p>(1) 도시의 개발사업(<u>도시계획법</u>, 주택건설촉진법, 도시재개발법, 택지개발촉진법, <u>토지구획정리사업법</u>, 도시공원법등)</p> <p>(2)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(국가공업단지조성, 지방공업단지조성, 논공단지조성, 중소기업단지조성, 수출자유지역조성, 공장부지조성등)</p> <p>(3) 공항의 건설사업</p> <p>(4) 관광단지의 개발사업(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, 온천단지, 공원집단시설지구등)</p> <p>(5) 기타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·증설이 필요한 경우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<u>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나~다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말한다</p> <p>나. -----<u>공사는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같다</u></p> <p>(1) -----(<u>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</u>-----</p> <p>-----<u>도시개발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(2)~(5) (현행과 같음)</p>

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(신 설)</u></p> <p><u>(신 설)</u></p> <p><u>(신 설)</u></p> <p>④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물의 인허가 및 신고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납부는 시설물의 예정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준공일자에 따라 연기또는 단축할수 있다</p> <p><b>제16조 (가산금)</b>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</p> <p><u>(신 설)</u></p> <p><b>제17조 (감면)</b>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·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8조 (부과액 조정 신청)</b> ①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9조 (지방세법의 준용)</b>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</p>	<p>1.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(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)</p> <p>2.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m<sup>2</sup>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</p> <p>3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</p> <p>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b>제17조 (가산금) ①</b> ----- ----- ----- 경우 ----- -----</p> <p>②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날로부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<b>제18조 (감면)</b> 군수는 공익상----- ----- -----</p> <p><b>제19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b></p> <p><b>제20조 (현행 제19조와 같음)</b>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0조 (권리·의무) 본 조례에 의한 권리 의무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다</u></p>	<p>(삭 제)</p>
<p><u>제21조 (사용의 제한) ①</u>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<u>늦어도 3일전에</u>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 (사용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<u>3일이</u> <u>내에</u>-----</p>
<p><u>제2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2조 (시행규칙) <u>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부 칙 (2000. 11. 15)</u>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요율적용)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.</p> <p>③ (요금적용)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<b>【별표 2】</b> 업종별 하수도사용요금표			<b>【별표 1】</b> 업종별 하수도사용요금표		
업종별	사용량(톤)	요금(원)	업종구분	사용단계별(m <sup>3</sup> )	m <sup>3</sup> 당단가(원)
가정용	0 ~ 10	68	가정용	1~20	96
	10초과~20	80		21~30	120
	20초과~30	92		31이상	152
	30초과~40	104			
	40초과~50	118			
	50초과~	130			
업무용	0 ~ 20	78	일반용	1~30	134
	20초과~ 50	98		31~50	156
	50초과~100	120		51~100	185
	100초과~300	144		101~300	207
	300초과~	168		300이상	238
영업용	0 ~ 30	120	대중탕용	1~200	125
	30초과~ 50	142		201~300	147
	50초과~100	163		301~500	169
	100초과~500	185		501이상	192
	500초과~	206			
욕탕1종	0 ~200	96	산업용	1톤당	72
	200초과~300	113			
	300초과~500	130			
	500초과~	148			
욕탕2종	0 ~ 200	169	침출수동	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	
	200초과~ 300	199			
	301초과~ 500	229			
	500초과~	260			
산업용	1톤당	72	산업용	1톤당	94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<b>【별표3】</b> 하수도업종구분표		<b>【별표2】</b> 하수도업종구분표	
업종별	구 분 내 용	업종별	구 분 내 용
가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하는 것</li> <li>◦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, 철물 등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미터미만</li> <li>◦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</li> <li>◦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,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</li> </ul>	가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하수도 사용자</li> <li>◦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,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</li> <li>◦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</li> </ul>
업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설소화전, 위탁시설(청소년회관, 체육시설에 한함)</li> <li>◦ 사회구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하는 시설</li> <li>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)</li> <li>◦ 학교, 정당, 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선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 수영장, 교회, 사찰, 국·공립 대학부속병원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</li> <li>◦ 병영, 신문사, 방송국,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, 공설소화전</li> <li>◦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 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</li> <li>◦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</li> <li>◦ 급수탑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/ul>	일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도 사용 업소</li> </ul>
영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식품접객업, 공연장, 숙박업, 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,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 포함) 차량판매, 정비업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 판매소 제외),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 보관업 포함), 음식점, 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</li> </ul>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업종별	구 분 내 용	업종별	구 분 내 용
영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진현상소,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다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</li> <li>◦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, 발전소, 이발소(미장원 포함)</li> <li>◦ 병원,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, 화훼, 식목업, 오피스텔</li> <li>◦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니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)</li> <li>◦ 도살장, 정육업, 양조업, 제빵업, 제분업(방아간 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제조업, 의약품, 화공약품, 화장품제조업,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, 합성수지 제조업, 페인트류제조업, 가구류제조업(자재가공 포함), 연료제조(고압가스제조 포함),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, 식료품 제조가공업, 피혁 제조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 업소</li> <li>◦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</li> <li>◦ 제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, 요업(시멘트가공제품, 초자제품 포함)</li> <li>◦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, 도시계획사업의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, 임시거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)</li> <li>◦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 요율적용)</li> <li>◦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</li> <li>◦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/ul>	일반용	
욕탕1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동탕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체 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/ul>	대중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반목욕장업</li> </ul>
욕탕2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◦ 바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</li> <li>◦ 가족탕업, 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체 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◦ 욕조 및 휴게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		
산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li> <li>◦ 두채 재배업소</li> </ul>	산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li> </ul>
<p>주) 1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</p> <p>2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수도업종을 적용한다.</p> <p>3.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</p>		(삭 제)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【별표4】 수질하수도 사용료</p>	<p>【별표3】 (현행과 같음)</p>
<p>【별표5】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</p>	<p>【별표4】 (현행과 같음)</p>
<p>【별표6】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인자부담금=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+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</p> <p><b>(신 설)</b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=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</p> $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하수발생량(m}^3\text{/일)}}{\text{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(m}^3\text{/일)}} \times \alpha$ <p>※ 총사업비는 <u>조례제7조제1항에</u> 대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.</p> <p><b>(신 설)</b>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=하수관거총사업비</p> $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하수발생량(m}^3\text{/일)}}{\text{하수관거의계획하수량(m}^3\text{/일)}} \times \alpha$ <p>※ 총사업비는 <u>조례제7조제1항에</u>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.</p> <p><math>\alpha</math>: <math>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율}^n}{100})</math></p> <p>n : 공공하수도 설치 완료이후 경과 년수</p>	<p>【별표5】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○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</p> $= \text{m}^3\text{당 원인자부담금(원/m}^3\text{)} \times \text{하수발생량(m}^3\text{/일)}$ <p>※ <u>m<sup>3</sup>당 원인자부담금</u></p> <p>-----</p> $\times \frac{1}{\text{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(m}^3\text{/일)}} \times \alpha$ <p>※ -----<u>조례 제15조제1항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※ <u>m<sup>3</sup>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매년 공고(공보)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$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하수발생량(m}^3\text{/일)}}{\text{하수관거의계획하수량(m}^3\text{/일)}} \times \alpha$ <p>※ -----<u>조례제15조제1항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math>\alpha</math>: <math>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율}^n}{100})</math></p> <p>-----</p>
<p>【별표1】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</p>	<p>【별지제1호서식】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(붙임 서식 참조)</p>